

19. 자진사퇴나 해고 후 얼마 만에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초과급료 문제나 최저임금문제라면 2 년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급료나 약속되어진 다른 혜택문제는 맨마지막으로 일한 날로부터 3 년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더청구할 급료가 있는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신고하십시오.

20. 노동청에서는 내 요구서를 꼭 받아줘야 하나요?

아니요. 고용주가 파산신고를 한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또는 노동청이 보상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신의 클레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1. 보상을 받으려면 대략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고용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하루에서부터 몇 주 또는 일년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 완벽하고 고용주가 협조적 이라면 빠른 시간에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기록에 결함이 있고 비협조적인 고용주라면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22. 풀타임과 파트타임 그리고 임시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노동청에서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그리고 임시직의 차이를 두지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풀 타임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파트타임과 임시직에게는 똑같이 제공 하지 않습니다. 풀타임 이나 정식직원이 아니라면 월급 외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사내 설명지침서를 설명 받을때 질문 하십시오. 더 질문이 있으시면, 미합중국노동청의 혜택담당서로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1-866-444-3272 또는 <http://askebsa.dol.gov/>

23. 교통비의 부담은 누가 집니까?

고용인이 알래스카주 안에서나 주 밖에서 알래스카주로 이동하는 교통비를 부담하였다면 고용일이 지나서 알래스카에서 떠날때도 마찬가지로 처음 고용 계약이 이루어진 곳으로 돌아 갈수 있도록 교통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고용인의 싸움, 과도한 음주, 직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일하는 주 3 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인한 것이라면 고용주는 돌아가는 교통비를 고용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직장환경과 급료에 대하여 처음 계약과 다르게 지급되었거나, 건강문제와 직장내의 안정상의 문제로 본인 스스로가 직장을 자진하여 퇴사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돌아가는 교통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KOREAN

노동청 과 인력개발부 인금과 시간 관리소

종업원들 이 가장자주 묻는 질문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추가질문사항은 알래스카주 노동법

인금과 시간 관리소

앵커리지 사무실: 907-269-4900

페어뱅크: 907-451-2886

주노: 907-465-4842

<http://www.labor.alaska.gov/lss/whhome.htm>

연방정부법은 주법과 다를수 있습니다.

만약 다르다 하면 연방법과 주법중 더 까다로운법을 적용시킵니다.

질문 이나 연락은

USDOL FEDERAL WHD 1-866-487-9243

Or 앵커리지 907-271-2867

1. 알래스카의 최저 임금은 얼마입니까?

시간당 \$11.91 인데, 총 노동시간에 \$11.91 를 곱한 액수로 계산됩니다. 이 액수가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입니다.

2. 초과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급료를 더 주어야 하나요?

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하루에 8 시간이상 근무하였거나 일주일에 40 시간이 넘어 가는 초과 급료는 일반급료보다 1.5 배를 더 주어야 합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노동청으로 연락하십시오.

3. 만약 본인이 시간제로 급료를 받지 않는다 하여도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직업이나 직체를 제외하고는 급료의 형태가 시간제 이던 월급제 이던 생산단가제 이던 커미션 제 이던 그 누구도 알래스카에서는 최저인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4. 본인의 상사가 초과 근무를 하라고 지시 할 수 있습니까?

네. 하루에 8 시간 이상이나 일주일에 40 시간이상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주는 일반 급료에 1.5 배가 되는 초과 근무수당을 주어야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초과 근무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 지역에 있는 노동청에 임금강탈을 고발하십시오.

5. 고용주가 초과근무수당 대신 보상근무면제시간을 줄수 있습니까?

아니요. 초과근무수당대신에 근무면제시간을 주는 것은 알래스카주에서는 불법입니다.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명목은 급료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월급제 근로자도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월급제 근로자 모두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자격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중 표준이 엄격하게 갖추어진 몇몇 전문인, 경영간부급과 행정관리 들만이 초과 근무수당 지급자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직무와 직업성 그리고 의무와 책임에 따라 초과 근무수당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종업원의 인원수가 몇 명이 되어야 고용주가 초과 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하나요?

종업원이 총 4 명 이상일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의 명수가 3 명미만일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8. 고용주가 나에게 “계약인” 이라고 칭한다면 그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약인 이라는 말은 주로 비즈니스를 독립적으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지만, 고용주가 청부계약인 이라고 칭한다면, 본인은 산재보험이나 사회보장연금 등 아무런 보호 없이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정부산재담당부서, 269-4980, 이나 지역의 노동청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9. 공휴일에 일 할 경우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특별 수당을 약속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 고용주가 공휴일에 일 할 경우 특별수당을 약속한 경우는 일반금료에 1.5 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상여금을 약속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금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고용주가 공휴일 상여금을 인정해 주기로 하고 정확하게 금액을 명시 하지 않았을 경우 종업원이 공휴일 날 일을 한 경우에는 일한 시간과 공휴일 수당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10. 병가, 휴가,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수당들은 고용인이 약속 하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병가, 휴가, 퇴직수당은 종업원이 일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이러한 수당들을 지불하겠다는 방침이 있었거나 약속을 한 경우에만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인이 이러한 방침이 있다면 노동청에는 방침을 제대로 적용하도록 권고강요합니다.

11. 대기로 있는 시간은 급여가 지불되어집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지불될 수가 있고 지불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대기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무선호출기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면 전화에 응답하기 전까지는 대기시간의 급여를 지불받지 못합니다. 만약, 직장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독서, 라디오, 다른 방문객을 받지 않았다면 이 시간 동안의 대기 급료를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12. 휴식시간이나 식사 시간은 법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14살이상 17세 미만의 미성년 종업원이 5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였을 경우 적어도 30 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인은 18 세 이상인 종업원들에게는 휴식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인에게 20 분 미만의 휴식시간을 허용했다면 고용주는 이 휴식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식사시간을 허용하고 그 시간이 20 분이상의 식사시간으로 쓰여졌다면 이시간내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3. 고용인이 나의 급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네. 고용인이 서면으로 급여의 변동사항이 있을 것을 통보하였다면 급여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가 매월 20 일에 지급되었다면, 변동된 급여의 적용날짜는 20 일 이후에 이루어 집니다.

14. 고용주는 어떤경우에 만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급여를 지불하여야 합니까?

현금이나 금전등록기에서 금액이 맞지 않은 경우나 행방 불명 또는 물건의 도난 등에 대해 종업원이 정확한 액수 등을 인정 하였을 경우에만 이 금액들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돈을 빌려주었고 종업원이 그 빌린 돈을 급여에서 공제 할수 있다고 서면으로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한 급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 당시 미래에 있을지 모를 도난 사고를 예상하여 백지서류에 싸인 한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제금액을 제외하였다 하여도 급여는 최저금액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초과금액 수당율도 줄여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종업원이 돈을 제삼자에게로부터 빌렸다면 급여에서 변제하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하면 그 금액을 제외 한 나머지 급여를 지불할수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세금과 양육비는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사항 등을 적용 공제 할 수 있습니다.

15. 급여명세서에는 어떤 항목들을 명시하여야 합니까?

매 급여주기마다 급여명세서에는 일한기간과 급여금액, 모든 공제 금액을 제외한 실 지급액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과 초과 급여액과 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기본 시간당 급여 금액이 명시 되어있어야 하고 총 급여금액과 세금 등이나 종업원이 허용한 공제금액 등을 빼고 난 실 지급액이 명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 시작날짜와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6. 종업원이 2 주후에 그만 두겠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고용주가 종업원을 해고 하였습니다. 종업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알래스카주는 종업원을 해고 할 경우 종업원에게 타당성을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노동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충분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 하면 변호인과 민사상으로 고용주를 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 지 상담해 보십시오. 인종, 교리, 색깔, 나이, 종교, 성별 이나 이와 비슷한 이유등으로 불법해고를 당하였다면 인권권리소 907-274-4692 나 1-800-478-4692 로 연락하십시오.

17. 직장을 그만둔지 얼마만에 급료가 지급되어야 합니까?

고용인으로 부터 해고조치를 받았다 하면 3 일 (주말 과 공휴일제외)안에 모든 급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진 사태시는 자퇴일로 부터 적어도 3 일 후 정기적 급료날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18. 임금 문제로 인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고용주는 3 일 안에 급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어떠한 이유로 노동청의 통보에 20 일 동안 답하지 않아도 됩니까?

노동부는 고용주가 자신을 방어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합니다. 이것을 “적당한 절차”라고 칭합니다. 노동부는 지역법원과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보내진 고소장에 응답할수 있게 20 일이라는 기간을 주어줍니다.